

## 구매 일반 조건

세플러코리아 유한회사(세플러코리아(유))

### I. 계약의 체결/법적 형태 요건

1. 공급자와 당사 간의 모든 법적 관계는 다음 계약 조건에 따른다. 공급자가 정한 조건 및 차이가 있는 약정은 서면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당사가 어떠한 계약 사항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사실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수락하거나 또는 이를 지불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영업 계약서를 비롯한 모든 변경사항, 부수적 계약, 영업 계약의 종료에 관한 선언, 기타 모든 발표 및 통지는 서면상으로 행해진다. 만일 공급자가 주문 접수 이후 2 주 내에 수락하지 않는다면 당사는 언제든지 해당 주문을 철회할 권리를 지닌다.

### II. 주문품 범위/주문품 범위 변경/예비 부품

1. 공급자는 공급한 물품을 당사가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모든 정보와 관련 데이터 및 상황 정보를 적시에 취득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공급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공급자는 공급한 물품이 사용상의 정확성, 안전성, 경제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아울러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최첨단임을 보장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 이행 시 모든 관련 표준, 법률 및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유독 물질과 위험 물질, 환경 보호와 사고 방지 관련 표준, 법률, 그리고 법적 규제를 준수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당사의 자체 표준뿐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 및 산업 약품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 물품을 수입하고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정부의 허가나 통지, 그리고 요구사항 일체를 당사에 알려야 한다.

2. 당사는 공급자가 공급 물품의 설계 및 제작상의 변경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급자에게 이러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공급자는 합당한 기간 내에 이러한 변경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결과, 예를 들어 완료일자나 추가 비용 또는 감소 비용 등에 관해서는 상호 만족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기 내용에 관한 계약이 합당한 시간 내에 체결되기 힘든 경우라면 당사가 이러한 변경에 따른 결과를 합당한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본 공급 계약이 종료된 이후 10 년 동안은 합당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예비 부품으로 공급 물품 또는 그 부품을 당사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 III. 가격/지불 조건

1. 상호 동의한 가격은 확정 가격이다.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적절하고 입증 가능한 인보이스의 수령 및 계약상 조건에 따라 이행 시점으로부터 14 일 이내에는 3% 할인 조건으로, 또는 차월 25 일까지는 2% 할인 조건으로, 또는 실제 납품일로부터 60 일 이내에는 순액으로 그 대금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만일 정해진 납품일 이전에 당사가 주문품을 수령하고 이를 수락한 경우라도 대금 지불기간은 정해진 납품일자로부터 개시된다. 단,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금 지불은 실제 납품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불 방법은 당사의 자유재량에 맡긴다 (예: 수표 또는 환어음).

인보이스에는 당사의 계약 및 고객 참조번호, 하역 장소, 공급자 번호, 부품 번호, 부품 개수, 부품별 가격, 납품별 물량 등을 명기하며, 사본 없이 제출한다. 공급자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신용전표 절차에 참여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2. 공급자는 당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 3 자에 의해 해당 손해배상청구를 회수하게 할 권리가 없다.

### IV. 납품 조건

1. 모든 주문품은 관세미지급인도조건(DDU, 최근의 인코텀즈)에 따라 당사가 지정한 위치에서 인도되며, 별도로 정한 조건이 없는 한 포장 및 보관이 포함된다. 당사의 관련 납품 조항 및 운송 조항은 최근 버전으로 적용된다. 당사와 당사가 지정한 수하인은 발송일자에 해당 선적에 관한 통보를 받는다. 해당 선적이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발송될 경우, 공급자는 당사 및 지정 수하인에게 선적의 규격과 하중을 적시에 통보하도록 한다. 운송보험은 납품 조건상 합의된 사항(최근의 인코텀즈)에 따라 당사에 그 의무가 주어지는 한 당사가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 구매 일반 조건

### 세플러코리아 유한회사(세플러코리아(유))

만일 인도된 물품에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당사는 즉시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관련 수출통제 규제를 준수하고, 도급 제품에 대한 통제 지정에 관해서는 당사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최소한 인도 시점까지는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2. 인도된 제품은 적절한 포장 상태라야 하며, 업계의 통상적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당사는 공급자에게 포장 종류 및 방법을 지시할 권리를 지닌다. 만일 공급자가 선납한 재생 가능 포장재 운임을 환급할 경우, 해당 포장재의 가치 해당액이 당사에 적용된다.

#### V. 인도일자/인도 불이행

합의된 일자 및 시한은 구속력을 지닌다. 당사 또는 지정 수하인이 적시에 주문품을 수령한 경우 인도일자 또는 조건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는 인도 지연 발생시 이를 즉시 당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또한 공급자는 지연 사유와 예상되는 지연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지연이 공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공급자는 당사에 적시에 이를 통보할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이러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도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공급자에게 계약상 페널티를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0.5%의 페널티가 매주 또는 주중 일부 기간에 적용되며, 최대 페널티는 총 주문대금의 5%이다. 이 계약상의 페널티 또는 페널티 이행에 관한 이러한 합의 내용은 인도 지연에 대한 정당한 모든 법적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계약상 페널티 지급액은 손해배상청구액에서 상계된다. 계약상 페널티는 지연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일까지 요구될 수 있다.

#### VI. 기밀 유지/정보

1. 공급자는 (i) 도면, 문서, 노하우, 샘플, 제조기기, 모델,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정보(이를 총칭하여 '정보'라 함)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고, (ii) 이러한 정보를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하청 공급업자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iii) 당사가 정한 바 이외의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의무는 사본 및 복제물에도 준용된다. 기밀 유지 의무는 (i) 해당 정보에 기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고, 공개 시점에 공급자가 이미 적법하게 획득한 정보, (ii) 공급자가 기밀 유지 의무에 적용 받지 않고 추후 적법하게 획득한 정보, (iii) 계약의 위반 없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 또는 (iv) 공개용 정보 및 독립적 사용에 대하여 공급자가 허가를 받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당사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광고하지 않는다.

당사는 정보에 대한 판권 등의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본이 제작될 수 있다. 사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사본이 제작되는 시점에 당사로 이전된다. 공급자는 당사를 대신하여 수탁자로서 해당 사본을 보관함에 있어 당사와 합의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자신에게 제공된 사본을 포함한 모든 문서 및 기타 자료를 자신의 비용으로 적절하게 보관하고, 완벽한 조건에서 유지하며, 이들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고, 당사의 요청에 따라서는 문서 및 자료를 반환 또는 파기함에 동의해야 한다.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자료를 보유할 권리가 없다. 공급자는 해당 자료의 완전한 반환 혹은 파기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2. 만일 공급자가 상기 VI 1.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화 40,000,000 원의 계약상 페널티가 부과되며 매 위반 발생시 이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공급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지는 계약상 페널티를 적용 받을 권리를 지닌다. 손실액은 기지급한 계약상 페널티에서 상계된다.

#### VII. 품질 관리/입고 제품 검사

1. 공급자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항상 감독해야 한다. 공급자는 당사와 체결한 품질 보증 계약을 준수해야 하며(원자재, 조립품 및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자를 위한 "공급자와의 품질 보증 계약", 범용성 공구의 공급자를 위한 "공구 공급자와의 품질 보증 계약", 포장재 공급자를 위한 "포장재 공급자와의 품질 보증 계약"), 이 계약은 추후 수정될 수 있다(이는 [www.schaeffler.com](http://www.schaeffler.com)의 "공급자/품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될 제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급자는 인도된 제품의 결함 제거에 대한 시기와 방법, 그리고 작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당사에 인도될 모든 제품에 대한 서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품질 보증 계약에 정의되어 있다. 공급자는 하청 공급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

## 구매 일반 조건

### 세플러코리아 유한회사(세플러코리아(유))

2. 당사는 외견상 현저한 결함 및 외견상 현저한 실체 차이 또는 물량 차이만을 검사한다. 당사는 이러한 결함이 있을 시 이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통보한다. 당사는 입고 제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권리를 지닌다. 또한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상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결함에 대한 통보가 지나치게 늦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다. 만일 결함이 발견된 경우 당사는 전체 선적분을 반환할 권리를 지닌다.

#### VIII. 품질 보증/비용 상환/보증 기간/보험

1. 만일 인도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의 조건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당사는 법적 권한을 지니게 된다. 산업 안전이 위협 받는 경우, 보통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따르는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당사의 고객에 대한 납품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공급자에게 통보 후 자체적으로 또는 제 3 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결함을 시정할 수 있다. 상기 문장에 따라 실시된 시정조치 결과로 발생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결함에서 비롯된 직, 간접적 손실 및 비용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최소한 단일 선적분의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는 통상적 검사 범위를 벗어난 입고 제품의 검사 범위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 내용은 당사 및/또는 당사 고객의 추후 업무 과정에서의 종합적 및 부분적 선적 검사에도 적용된다. 만일 공급자가 이행을 맡을 제 3 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급자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기타인과 관련해서 해당 제 3 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공급자는 결함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황에서 당사 및 당사 고객이 손실을 회피, 방지 및 경감하기 위하여 비용이 지출된 경우(예: 리콜) 당사 및 당사 고객에게 이러한 비용을 상환한다.

3. 공급자는 당사가 고객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만약 해당 비용이 공급자가 인도한 선적물 상의 결함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이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4. 의무적 법률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선적 수령일 또는 수락일로부터 36 개월 이내에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때는 이러한 수락이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요구되었던 경우라야 한다. 부가적 특정 이행 사항(결함 시정 또는 무결함 제품 인도)을 실행하는 경우, 본 기간은 인도된 제품이 계약상에 규정된 바 대로 사용될 수 없는 시기까지 해당한다. 부가적 특정 이행 사항은 또한 상기 기간에 적용된다. 결함에 관한 모든 배상청구 시한은 당사의 고객이 제기한 배상청구 중 마지막 청구가 이행된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2 개월 후로 정해진다.

5. 공급자는 공급 관계 기간 동안 상기 VIII.에 기술된 리스크를 담보할 적절한 보험을 유지한다.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당사에 제공한다.

#### IX. 당사에 제공되는 자재, 포장재 및 공구

원료, 부품, 컨테이너, 특수 포장재, 공구, 측정도구 또는 소재나 유사 물품(각각 '부수 물품')은 당사의 재산이 된다. 부수 물품, 부수 물품의 통합, 부수 물품의 혼합이 발생한 경우, 당사와 공급자는 새로운 물품의 공동 소유주가 될 수 있다. 공동 소유 지분은 새로운 물품의 총 가치에에서 부수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라 비례적으로 결정된다. 부수 물품은 사전 서면 동의 하에서만 복사 또는 복제될 수 있다. 복사물이나 복제물은 제작 시점부터 당사의 재산이 된다. 공급자는 부수 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치권을 지니지 않는다. 부수 물품 또는 이에 대한 복사물이나 복제물을 하청 공급업자를 포함한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상호 동의한 내용과 상이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X. 공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는 공급된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공구에 대하여 입증된 비용에 당사가 기여한 경우라면 해당 공구에 대한 단독 또는 공동 소유권을 지닌다. 당사는 대금 지불 시점부터 공구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공구는 공급자에게 임대된다. 공급자는 당사의 동의 하에서만 공구를 법적 또는 사실적 의미로 '처분', 위치 변경 또는 영구 불능화 할 수 있다. 공급자는 공구에 당사 또는 공동 재산임을 표시한다. 공급자는 공구의 유지, 수리,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는 교체 공구에 대하여 교체 전 공구에 대한 비율적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지닌다. 공구가 공동 소유인 경우 당사는 공급자의 공동 소유 지분에 대하여 최초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 구매 일반 조건

### 세플러코리아 유한회사(세플러코리아(유))

공급자는 공급된 물품의 제조 용도로만 사용되는 당사 또는 공동 소유의 공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주문품 인도 후에 공급자는 당사의 요청 하에 즉시 해당 공구를 당사에 반환해야 한다. 당사에 반환된 공동 소유 공구에 대하여는 당사가 공급자에게 당시의 공급자 공동 소유 지분 가치를 상환한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구를 보유할 권리가 없다. 공급자의 공구 반환 의무는 공급자의 파산 신청이나 공급 관계의 장기적인 중단 상황에도 적용된다. 공급자는 상호 동의한 범위에서 또는 이러한 범위가 없을 시에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공구를 담보할 보험에 가입한다.

#### XI.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인도 범위 조건에 표준화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은 한 공급된 물품의 인도로부터 5 년간의 비용에 대한 적절한 상환의 대가로 당사의 지시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변경/개선함에 동의한다.

#### XII. 불가항력/장기적 인도 불능

1. 노사 갈등, 폭동, 정부 조치 등 예측과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불안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및 이러한 불안이 지속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와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에서 면책된다. 불가항력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주어진 한계 내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이러한 상황의 영향력을 제한하도록 한다. 불가항력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계약 당사자 일방은 해당 상황 종료 시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인도 불능, 지불 중단, 파산 절차 개시, 자산 부족 또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과 관련해서 유사 절차의 개시로 인한 파산 절차 개시 거부 기간이 3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다른 일방은 이 계약의 미이행 잔여 부분을 무효화할 권리를 지닌다. 만일 상기의 상황이 공급자에게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된 물품의 제조를 당사 또는 제 3 자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협조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제공을 포함하며, 이러한 권리가 관련 제품 제작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리고 이러한 라이선스가 업계의 통상적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 XIII. 기타

1. 모든 인도 및 이행의 완료 위치는 당사가 규정한 최종 위치여야 한다.

2. 계약상 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며, 법률의 저촉에 관한 대한민국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법적 사법권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울지방법원에 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은 기타의 합법적 사법권에서 상대방을 제소할 수 있다.

3. 만일 이 계약 조건의 특정 조항이 현재 무효한 상태이거나 무효화되는 경우라도 잔여 조건은 유효하다.

4. 당사는 업무 거래 과정상의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처리함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모든 법적 규제를 준수한다.

세플러코리아 유한회사(세플러코리아(유))  
Schaeffler Korea Yuhan Hoesa